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8월 31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

## 1. 개정이유

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서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강화를 위해 서울시 등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의 경우 우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적용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 (안 제3조)

-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근거법령을 명시하고, 안 제2조 용어정의

규정에서 대상에 대한 의미를 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간명하게 정비

나.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서울시 등 다른 보훈 관련 조례에 따라

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급제외 단서규정 및 중복지원 금지 규정 삭제  
(안 제8조의2, 제11조)

다. 그 밖에 법제처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 (안 제2조,  
안 제7조, 안 제8조, 안 제8조의2, 안 제11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및 개인은 2022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참조: 복지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(<http://www.sdm.go.kr>) 메인화면 상단(구정소식/공고/입법예고)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·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(우편번호 03718)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
(연희동) 서대문구청 복지정책과

※ 기타 문의 : 전화 02)330-8634, 팩스 02)3140-8377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『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 내용	의 견	비 고